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9. 1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8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6년 8월 31일
 - 다. 상정일자 : 제121회 제1차정례회 제2차위원회 (2006. 9. 13)
-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최 두 열

가. 제안이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일상적인 징수업무 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2조).
-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련, 1년차 체납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지급기준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에서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안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현행규정에는 지급기준을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했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세분한 행정자치부 표준안 내용과 같이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보통 1년간 포상금이 어느정도인가?
- 답변요지(최두열 세무2과장) : 2005.1월~4월까지의 개정전에 약 1,300만원이었는데 개정후에는 1,200만원으로서 약145만원 정도 줄어들게 됨.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달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가.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 일상적인 징수업무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 관련, 1년차 체납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지급기준

현행	개정안
·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과년도 미수액 중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3. 개정근거 : 행정자치부 지침(2006. 3. 28)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6. 8. 3 ~ 2006. 8. 23)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8. 28)

다.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금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 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2항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한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u>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u>조세범처벌법</u>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미수액 일체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미수액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하며, 부과한 당해 년도의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한 것은 특별공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략)	<u>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u> 제2조(지급대상) ①.(생략) ②..... 「조세범처벌법」..... 포함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국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u>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u> 3 ~ 5. (생략)	제3조(지급기준) 1. (현행과 같음) 2. <u>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u>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①~②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u>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u>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지급)①~②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 및 제4항.....